#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출 일 : 2024. 3. .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례안 제1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 2.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3. 주요내용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
-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 4. 그가 추진현황

○ 조례일부개정 방침결정 : 2024. 1. 30.

○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없음) : 2024. 1. 30. ~ 2. 19.

○ 조례·규칙심의회(원안가결) : 2024. 2. 27.

# 5. 추진계획

○ 조례안 부의안건 심사,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4. 3 ~ 4월 중

- 6. 개정조례안 : 별첨
- 7.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내용 첨부 : 붙임

#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읍·면·동 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미래교육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미래교육과장 이 유 미		
	팀장 직위·성명	평생학습운영팀장 이 혜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전 재 익 (031-590-408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4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의 설치·운영) 시장은 읍·면·동
	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
	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
	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나. 비용 발생 요인
  - 상위법 **「평생교육법」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의 개정 및 시행으로 개정되는 본법(「평생교육법」제21조의3) 제2항에 따른 읍 · 면 ·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추가하는 일부개정이 필요함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3. 미 첨부 사유

- 「평생교육법」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반드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추가해야하는 사항임.
- 현 조례상 시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어있고 각 읍·면·동에 이미 주민자치센터 및 도서관 등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준하는 기능을 하고있으며, 이를 지정 및 활용이 가능하기에 설치에 따른 예산은 미미하거나 따로 수반되지 않음.

- 위에 따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예산은 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에 따른 현판 제작·설치 등에 그칠 예정임. 유사 사항으로 평생학습과-10033 (2019. 11. 27.)호에 따라 최근(2019년) 마을학습관인 학습등대 현판설치 관련 견적내용을 보았을때 1개소당 단가는 132,000원(세액포함)임. 이에 비추어 최대 16개 읍·면·동 현판 설치 추정금액은 2,112,000원이나 2024년 현 시세를 반영해 단 가가 상승해도 추가 비용은 1억원 미만으로 추정됨
- 조례안 일부개정 이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던 기존 평생학습 운영 사업에 기반한 휴먼북 인생대학 읍·면·동 캠퍼스 설치 및 운영 / 휴먼북과 시민이 소통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추진(별도 예산 편성), 지역별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거점 마련(별도 예산 편성)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u>예산 수반없이</u>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진흥과 확산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으로만 운영될 사안임

# 4. 작성자

문화교육국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Ą	성별영향평	가 검토	의견 통보	ᅫ	
관리번호	2024A경기남양008				
정 책 명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관병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부서	부서명	미래교육과			
	담당자명	전재익	전화번호	031-590-40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미래교육과)	<ul> <li>○ 재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li> <li>-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제21조3의 개정으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우리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li> <li>- ○ 2023. 4. 18. 개정된 「평생교육법」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시행일(2024. 4. 19.)에 맞추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례 제14조의2를 신설</li> </ul>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연희/031-590-3965)

미래교육과장 귀하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2024-남양주-08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주현		
미래교육과	입 안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이혜진		
2024, 1. 22.				
원 안 동 의				
분 건	] 토결과	조치사 항		
		62		
	남양주시 평생교육 감사관 미래교육과 2024. 1. 22.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홍 조례  같사관 평가 달 당자 격급 및 성명 미래교육과 입안 달 당자 직급 및 성명  2024, 1, 22.  원 안 동 의		

2024년 1월 22일

####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

미래교육과장 귀하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 남 양 주 시



수신 미래교육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평생교육진홍 조례」일부개정안)

- 1. 남양주시 미래교육과-845(2024, 1, 17.)호와 관련됩니다.
- 2.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률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는 사항 으로,「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의회법무관정기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남성에 의회법무과장 유선기 함. 기계개혁팀장 남성에 의회법무과장 유선기 함조자 시행 의회법무과-1105 (2024. 1. 18.) 접수 미래교육과-948 (2024. 1. 19.)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급곡동) / http://www.nyi.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i1235@korea.kr / 비광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붙임5 입법예고 결과 보고

저장: 전제역 / 미래교육과 (2024-02-21 18:24:49)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 1. 미래교육과-1332(2024, 1. 30.)호와 관련입니다.
- 「남양주시 자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실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및 조례안 발의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 30, 2024, 2, 19,(20일간)
  -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의견제출 0건

붙임 :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임법예고문 1부, 끝,

 학교적
 변경
 이해진
 미래교육자항
 이유에
 문화교육국장
 선경 2024, 2, 21, 용세환

 협조자 의회법무원장 강설
 의회법무과장 완선기

 시행 미래교육과=2211
 접수

 우 12249
 경기도 남양주시 다신증암로화2반안길 138, 3층 미래교육과 (다산 / http://www.rwi.go.kr

 전화번호 031-590-4082
 핵소변호 031-590-5367
 / tkjunaa@korea.jcr
 / 대국만 공개

- 정막용의 도시 남양주!-

문서관리카드미래교육과-2211 1/1

# 참고 참고자료

### ☑ 「평생교육법」

-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